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본문중 '연 2월'을 '연 60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연 6월'을 '연 180일'로 한다.

제21조본문중 '필요한 기간 공가'를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로 하고, 동조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명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2조제6항중 '법 제46조 2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을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한다.

제24조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 우 자 (처)	1
사 망	배 우 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 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속부모	3
탈 상	배 우 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17조 (생략)		제1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제18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u>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u> .....
제20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 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병가) ① .....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6월 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
제21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가) .....		.....
1 - 3 (생략)				.....
4. (신설)				.....
5. (신설)				.....
				..... <u>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u> .....
				1 - 3 (현행과 같음)
				4. <u>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u>
				5. <u>원격지간의 전보명령을 받고 부임할 때</u>
				6. <u>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현행제4호와 같음)</u>

현행	개정안
<p>제22조(특별휴가) ① - ⑤ (생략)</p> <p>⑥법 제4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4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제22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 .....</p> <p>.....</p> <p>.....</p> <p>제24조(공무외의 국외여행) .....</p> <p>..... (삭제) .....</p> <p>.....</p> <p>.....</p>